

City of Shoreline 차별 금지 정책

City of Shoreline에서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이민 신분, 신념, 인종,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또는 성 정체성, 나이, 장애 여부, 민족성, 주거 상황, 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과 표적화 없이 존엄과 존중으로 본인의 삶을 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지지합니다. 2017년 Shoreline 시의회에서는 City of Shoreline이 모두를 위한 따뜻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지역사회임을 선언하는 결의안 401을 만장일치로 도입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시 정부의 관행과 정책, 그리고 Shoreline 지역사회에서 지지하는 가치를 다시금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 정부는 Shoreline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며 방문하는 모두를 위한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지역사회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제II장

City of Shoreline에서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충 처리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시 정부의 고충 처리 절차는 City of Shoreline의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시설 또는 혜택 제공에 있어 장애 여부에 근거한 차별 혐의를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자 하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여부에 근거한 불법 차별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인은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거나 ADA 고충 처리 양식을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최대한 빠르게 접수해야 하지만 주장하는 위반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ADA 고충 제기 양식 또는 서면 불만 제기는 시 정부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ity of Shoreline
ADA Coordinator – Code Enforcement and Customer Response Team Supervisor
17500 Midvale Avenue N
Shoreline, WA 98133

시 정부의 ADA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ADA Coordinator
(206) 801-2700
TTY 206-546-0457

1964년 민권법 제VI장

City of Shoreline에서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수정된 1964년 민권법 제VI장, 1987년 민권회복법, 행정 명령 12898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시 정부의

정책이라는 공공 통지를 공표합니다. 제VI장은 미국의 시 정부에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어떠한 사람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로 인해 참여에서 제외당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달리 차별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VI장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 관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City of Shoreline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시청 사무소(Office of City Clerk)에 차별 혐의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시청의 고충 제기 절차 제VI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City of Shoreline 제VI장 코디네이터에 문의하십시오:

City of Shoreline
Title VI Coordinator – Assistant City Manager
17500 Midvale Avenue N
Shoreline, WA 98133
(206) 801-2212

시 정부 시설

워싱턴 차별 금지법(WLAD)에서는 시 정부 건물과 같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성 표현 또는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RCW 49.60.010). WLAD 집행 책임이 있는 주 기관인 워싱턴주 인권위원회(HRC)에서는 WLAD에서 성전환자가 화장실 및 본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기타 성분리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함을 규정한 2015년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본 요건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 알리기 위해 시 정부에서는 프로그램 해당 시설의 화장실에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웹사이트(www.hum.w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